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9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황명선·한준호·조승래

이재관 • 박민규 • 송재봉

박희승 · 서미화 · 강득구

주철현 • 모경종 • 이해식

홍기원 · 장경태 · 김현정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지난 2020년 공익형직불제도의 도입과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생산의 과잉이나 가격 등이 하락하는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여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, 소극적인 조치로 인하여 최근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.

이에 농가 재배면적의 47% 수준을 차지하는 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불안정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쌀값 안정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안정적인 양곡 수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량 안보 및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신설).
- 나.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함(안 제16조의3 신설).
- 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 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16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국민경제"를 "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경제" 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"미곡"을 "미곡・밀・콩"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"(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)"을 "(양곡의 수급계획수립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매년 정부관리양곡"을 "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"정부관리양곡"을 각각 "양곡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경우"를 "후"로, "거친 후"를 "거쳐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한다"를 "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3. 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에 관한 사항
제5조제1항 중 "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"를 "제16조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"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매입·판매가격"을 "매입·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, 매입·판매가격"으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(양곡의 가격 보장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정적인 양곡 수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량 안보 및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가격보장의 대상이 되는 품목과 양곡의 기준 가격 등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가격보장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한다.
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보장에 따른 차액지급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, 심의에 따라 지급비율이 결정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5항 중 "방식, 매입·판매 물량의 산정, 매입·판매의 시기·절차"를 "방식, 매입·판매의 절차"로, "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 등과의 협의기구 구성·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"을 "필요한"으로한다.

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양곡수급관리위원회)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- 2.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- 3.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·판매여부, 매입·판매물량, 매입·판매시기 및 매입·판매가격
- 4.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
- 5.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 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
- 2.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
- 3.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
- 4.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
-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

- 2. 양곡 수급과 관려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
- 3. 학계,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
-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의4(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)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 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
 - 2.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
 - 3.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양곡의 효율	제1조(목적)
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	
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	
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<u>국</u>	실
<u>민경제</u>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	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
한다.	<u>국민경제</u>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"공공비축양곡"이란 양곡부	3
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	
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	
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	
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	
는 <u>미곡</u>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	<u>미곡·밀·콩</u>
는 양곡을 말한다.	<u>.</u>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	제3조(양곡의 수급계획 수립) ①
<u>수립)</u>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	
<u>매년 정부관리양곡</u> 의 수급계획	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
(이하 "양곡수급계획"이라 한	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
다)을 세워야 한다.	<u>양곡</u>
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	②

1	. 1 -1 1	1 -1 -1 -1	-1 1
호의	사항이	포함되어야	하다.

- 1. <u>정부관리양곡</u>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- 2. <u>정부관리양곡</u>의 수요량 및 공급량
- 3.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
- 4. (생략)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<u>거친</u>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) 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 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 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.

1. <u>양곡</u>
2. <u>양곡</u>
3. 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에 관한 사항
4. (현행과 같음)
3
후 거쳐 -
4
<u>하고 지체 없이</u>
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
여야 한다.
에5조(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)
①
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
리위원회의 심의 후 국무회의의
심의를 거쳐

② (생략)

- 용) ①・② (생 략)
 - 시장가격으로 한다.

④ (생 략)

<신 설>
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10조(공공비축양곡의 비축・운 제10조(공공비축양곡의 비축・운 용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・판매 ③ ----- 매입・판매물 가격은 매입・판매지역의 당시 | 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 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, 매 입・판매가격---.
 - ④ (현행과 같음)
 - 제15조(양곡의 가격 보장)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정적인 양곡 수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 고 식량 안보 및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 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가격보장의 대상이 되는 품 목과 양곡의 기준 가격 등은 제 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가격보장의 대 상이 되는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한다.

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) ① ~ ④ (생 략)

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, 매입·판매 물량의 산정, 매입·판매의 시기·절차,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·운영 및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⑥·⑦ (생략) <신 설>

	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
	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
	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보장에
	따른 차액지급의 비율을 조정할
	수 있고, 심의에 따라 지급비율
	이 결정된 경우 이를 고시하여
	<u>야 한다.</u>
제	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
	수급 관리) ① ~ ④ (현행과 같
	승)
	5
	번
	<u>식, 매입·판매의 절차</u>
	필요한
	⑥·⑦ (현행과 같음)
제	16조의3(양곡수급관리위원회)
	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
	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
	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
	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
	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

- 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- 2.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- 3.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른 양곡의 매입·판매여부, 매입·판매서 기 및 매입·판매가격
- 4.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

 면적의 조정
- 5.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과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 의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 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 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

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- 1.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 <u>정</u>책관
- 2.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
- 3.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
- 4.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본부장
-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
- 2. 양곡 수급과 관려이 있는 유 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
- 3. 학계,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 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 문성을 가진 사람
-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4(미곡의 가격안정을 위

<u><신</u>설>

한 선제적 수급조절)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.

- 1.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 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
- 2.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 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
- 3.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

 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

 사업